

2019년도 제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4.(목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497건(안건번호 제2019-6722호~8546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위원 이름만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하면 될 것으로 보임
- B 위원 :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6722~8546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3,497건임
안전번호 제2019-6722호는 익명 신고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

하였음

국내 사이트인 '△△'의 이용자가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132GB 용량의 일본 최신 가요 음원파일로 연결된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번호 제2019-6722호 '△△'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한 링크 설정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음원의 용량이 132GB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드라이브'에서 대용량 저장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추가로 스토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과 링크로 연결되는 드라이브 내 음원파일들을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눌러 '구글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수십 개의 폴더가 있고, 각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음원파일이 있음
- A 위원 :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던 링크 방식의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임 또한 클라우드에 저장된 음원파일은 외국인의 저작물로 확인되므로 저작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것임

- B 위원 : 심의대상 안건은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722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6723호는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에 뮤지컬 곡 ‘맨 오브 라만차’ 음원파일을 게시한 사안임
(‘뉴욕타임즈’의 부고 기사를 제시하면서) ‘맨 오브 라만차’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극중극 형식으로 각색하여 1964년 미국에서 초연한 뮤지컬인데, 심의대상 게시물의 동명 곡은 2014년 사망한 미국인 ‘미치 리’가 작곡, 2001년 사망한 미국인 ‘조 다리온’이 작사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음원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게시자가 음원파일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외국인 실연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함
(심의대상 게시물과 해당 블로그를 보여주며) 게시물 하단에 연기학원 연락처 등 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연기학원 홍보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 번호 제2019-6723호 블로그 내 뮤지컬 음원파일 제공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MR이면 노래를 부르는 실연은 없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들려주면서) MR은 통상 연주만 나오는데, 해당 음원파일은 특이하게 중후반부에 실연자의

목소리가 나옴

- 정현순 전문위원 : 해당 곡은 '돈키호테'와 '산초'가 함께 부르는데,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산초' 파트로 보임
'돈키호테'역을 맡은 배우가 노래 연습을 하려면 게시물과 같이 '산초'의 목소리가 나오는 음원파일이 필요할 것임

- A 위원 : 한 곡 전체 분량이 이용된 것이므로, 설령 실연자 파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음원 재생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약 3분 7초임
대법원은 이른바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에서 뮤지컬이 단독 저작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곡은 뮤지컬의 구성부분이지만,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개별적인 이용이 가능하므로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한 곡 전체 분량의 음원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른바 '전유형 (Appropriation)'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보다는 제35조의 3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될 것으로 보임

- B 위원 : 해당 음원파일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곡은 2003년, 2015년, 2018년에 CD로 발매된 것으로 확인되나, 다양한 버전이 유통되고 있어 심의대상 게시물과

완전히 동일한 음원을 찾지는 못하였음

(유튜브 게시물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다만 유튜브에 심의대상 게시물과 완전히 동일한 음원이 있음

- A 위원 : 판례의 태도와 저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B 위원 : 뮤지컬 학원에서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사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학원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이며, 게시물 하단에 연락처를 기재하였음
- B 위원 : 관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
뮤지컬 MR을 블로그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723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19-6724호~8546호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프로그램, 음악, 영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화면을 보여주며)검토보고서상 저작물명이 '10cm'의 '그러나'로 되어 있어 마치 1개의 음원파일만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음

해당 게시물에서 다수의 음원파일을 압축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에게 안전 번호 제2019-6724호~854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안전 중 '10cm의 그러나'는 언제 발매된 음원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2019년 3월 7일에 음원으로 발매된 최신곡이라고 답변함
- A 위원 : 나머지 안전에 대해서도 불법복제물이라고 판단되므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이견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6724호~8546호는 만장일치로 모두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6722~8546호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3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1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정태호